

보도자료

2016. 10. 13.



대 법 원
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	사법지원실
담당자	사법지원심의관 김영욱(☎02-3480-1368)
공보관실 ☎ 3480-1451	

대법원 회생·파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

- 회생·파산위원회에서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로 -

■ 2016. 10. 13. 오전 11:00 대법원에서 회생·파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

- 2016. 10. 13. 11:00 ~ 12:00 회생·파산위원회(이하 '위원회', 위원장 오수근) 임시회의 개최
- 위원회는 설립 당시 위원회가 직접 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, 절차관계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도산감독업무를 담당할 것을 전제로 제도설계 되었으나, 실제로는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, 향후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감
- 위원회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상임위원과 실무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「회생·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이 2016. 9. 6. 개정되었고, 이에 맞추어 위원회 상임위원과 실무지원단장, 간사가 지명되었으며, 실무지원단원도 충원되는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음
- 위원회는 앞으로 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하는 등으로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건의문 채택을 의결함

건의문의 주요 내용

- **도산감독기능 활성화방안**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
 - 절차관계인 선임에 참여
 - 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**관리위원 후보자**를 추천함
 - 관리인·보전관리인·감사 선임과정에서 **적격·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**하도록 함
 - 개별 법원이 **파산관재인·조사위원 후보자 명단**을 작성하되, 위원회가 **의견을 제시**하도록 함
 - 위원회에서 외부(전임, 비전임) 회생위원 위촉 시 **서류 및 면접심사**를 담당하는 등 위촉절차에 참여하기로 함
 -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 실시
 -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**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**를 실시하기로 함
 - 필요할 경우, **비정기적으로 수시 평가**를 실시하기로 함
 - **도산절차 신고센터**를 설치하여 도산절차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신고 받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

임시회의

- 일시·장소 : 2016. 10. 13. 11:00 ~ 12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
- 안건 : 회생·파산위원회 활성화 방안(심의·의결안건)

건의문 의결

- **건의문 전문**

○ 회생·파산위원회의 도산감독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

- 절차관계인 선임에 참여

•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

- ▶ 회생·파산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되, 지방 법원장의 관리위원 위촉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
- ▶ 현재 관리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도록 함

• 관리인·보전관리인·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제시

- ▶ 관리인·보전관리인·감사 선임 권한을 개별 재판부 자율에 맡기되, 선임과정에서의 면접결과표, 이력서 등을 회생·파산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고, 회생·파산위원회에서 적격·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
- ▶ 위와 같은 내용으로 「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」를 개정하도록 함

• 파산관재인·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관한 의견제시

- ▶ 개별 법원이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되, 회생·파산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추후 정기적으로 회생·파산위원회에 평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
- ▶ 위와 같은 내용으로 「회생사건처리에 관한 예규」, 「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」를 개정하도록 함

• 외부(전임, 비전임) 회생위원 후보자 추천

- ▶ 외부(전임, 비전임) 회생위원을 모두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통일하고, 회생·파산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등 외부(전임, 비전임) 회생위원 위촉절차에 참여하도록 함
- ▶ 위와 같은 내용으로 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」을 개정하도록 함

-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 실시

• 정기 평가 실시

- ▶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(제3자 관리인 선임 내역, 선임 사유,

관리인 등 절차관계인의 부정행위 등 적발사례 및 사후조치 내역,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시행에 따른 브로커 적발 사례,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정 결과 등)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

- ▶ 정기 평가를 바탕으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정책을 건의하고, 법원 자체적으로 절차관계인을 해촉하거나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,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대한변협 등에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함

• 수시 평가 실시

- ▶ 정기 평가 결과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거나, 특정 절차관계인(외부회생위원, 파산관재인 등) 또는 특정 법원을 설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

• 신고센터 운영

- ▶ 법원 홈페이지에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산절차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신고 받아 필요시 수시 평가를 실시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

□ 참고 : 회생·파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경과

○ 개요

- 회생·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,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·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·파산위원회를 2013. 11. 28. 법원행정처에 설치

-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

○ 제1차 정기회의(2013. 11. 28.)

-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

○ 제2차 정기회의(2014. 4. 22.)

-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

○ 제3차 정기회의(2014. 12. 17.)

-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

○ 제4차 정기회의(2015. 6. 16.)

- 회생절차의 접근성 · 효율성 제고 방안 건의

○ 제5차 정기회의(2015. 12. 14.)

- 개인회생 · 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 건의

○ 제6차 정기회의(2016. 6. 15.)

-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선 방안 건의